

『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선정마을 지역개발(인센티브)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기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주민지원기금 이자는 구미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징수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 조례안은

- 2013. 9월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인 옥성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정·시행된 조례로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